

##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 규정

제정 2009. 05. 18.  
제1차 개정 2012. 11. 3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고 한다)의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정관, 학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그린캠퍼스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
2. 그린캠퍼스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심의
3. 그린캠퍼스 추진사업 관련 이의신청 및 조정 등에 대한 심의
4. 기타 그린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부총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입학홍보처장, 사무처장, 생협상임이사, 학생회대표, 동아리연합회대표를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2.11.30)  
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  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의 1(소위원회)** 그린캠퍼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다.

(조 신설 2012.11.30)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은 전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  
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
**제6조(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8조(기타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627, 2009.5.15)

이 규정은 2009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1787, 2012.11.30)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